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병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28일

발 의 자 : 고병국, 노식래, 서윤기, 강동길,  
이광호, 이태성, 김호진, 이성배,  
양민규, 김호평, 권순선, 봉양순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 방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변경함(안 제37조제6항).
-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37조제9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6항 중 “20명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  
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특별위원회) ①~⑤ 생략</p> <p>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<u>20명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.</p> <p>⑦~⑧ 생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37조(특별위원회) ①~⑤ 현행과 같음</p> <p>⑥ -----<u>15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⑦~⑧ 현행과 같음</p> <p>⑨ <u>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u></p>